

2020 - 443

(7) (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03호(2009.12.10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0호(2010.06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33호(2010.09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4호(2011.09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86호(2013.0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25호(2013.07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84호(2014.05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25호(2014.12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2호(2016.0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9호(2017.02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3호(2017.06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37호(2017.11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3호(2017.12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4호(2018.02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98호(2018.06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54호(2019.02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6호(2019.03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30호(2019.04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16호(2020.05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1호(2020.06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76호(2020.09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98호(2020.09.24.)로 변경 결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합니다.
2.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5일
서울특별시

1.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 (변경없음)

명 칭	유 형	위 치	면 적(㎡)			지정목적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	주거지형	동작구 노량진동 270-2번지 일대	738,878.5	-	738,878.5	동작구 노량진동·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,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2.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 3.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(변경,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)
 가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33,154.5	－	33,154.5	100.0	－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10,676.5	－	10,676.5	33.2	－
	도 로	2,533.5	－	2,533.5	7.6	－
	공 원	7,778.0	－	7,778.0	23.5	－
	학 교	365.0	－	365.0	1.1	－
택 지 (획 지)	소 계	22,478.0	－	22,478.0	67.8	－
	7-1	22,478.0	－	22,478.0	67.8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나. 용도지역에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1) 용도지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합 계			33,154.5	－	33,154.5	100.0
주거 지역	일반 주거 지역	소 계	33,154.5	－	33,154.5	100.0
		제1종일반주거지역	7,778.0	－	7,778.0	23.4
	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2,075.9	－	2,075.9	6.3
		제2종일반주거지역	23,300.6	－	23,300.6	70.3
		제3종일반주거지역	－	－	－	－
	준주거지역		－	－	－	－
일반상업지역			－	－	－	－

다.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(변경)

1)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위치		사용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기점	종점			
기정	중로	2류	9	15	특수 도로	640 (115)	상도동453	대방동45-3 8	보행자 우선도로	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(2009.12.10.)	-
기정	중로	2류	25	15~2 0	집산 도로	1,325 (292)	대방동49-6	상도동366- 5	일반도로	총독부고시 제722호 (1936.12.26.)	등용길
기정	소로	3류	10	5~6	특수 도로	32	대방동11-2 5	대방동68-2 3	보행자 전용도로	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(2010.06.03.)	-

※ ()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

2) 공원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기정	①	노량진근린공원 (대방공원)	근린공원	대방동 226-7번지 일대	6,881.6	-	6,881.6	-	-
변경	④	노량진근린공원 (생태공원)	근린공원	노량진동 252-3번지 일대	15,746.4 (896.4)	감10,195 .0 (-)	5,551.4 (896.4)	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03호 (2009.12.10.)	-

※ ()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

※ 정정사유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16호('20.05.28.)상의 변경사항(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따른 생태공원 면적 축소) 반영을 위한 면적 정정

3) 학교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변경	①	영화초교, 영등포 중고교	학교	대방동 13-2번지 일대	47,346.. 0 (365.0)	감 14 (-)	47,332.. 0 (365.0)	서울특별시고시 제1978-178호 (1978.04.26.)	-

※ ()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

※ 정정사유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3호('17.12.21)상의 학교 변경사항(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학교 면적 축소) 반영을 위한 면적 정정

라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)

시설구분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공동이용시설	경비실	노량진7재정비 촉진구역내	-	증)67.32	67.32	누락시설 표기
	관리사무소		120.00	감)12.99	107.01	데크층
	근린생활시설		700.00	감)51.65	648.35	-
	주민공동시설 (주민회의실)		68.00	증)26.73	94.73	데크층
	경로당		242.00	증)62.17	304.17	데크층
	어린이놀이터		750.00	증)146.08	896.08	-
	주민운동시설		400.00	증)646.51	1,046.51	데크층
	작은도서관		230.00	증)87.9	317.90	데크층
	보육시설		335.00	증)6.5	341.50	데크층
	주민휴게시설		85.00	감)85.00	-	-
	실외운동시설		-	증)269.97	269.97	누락시설 표기

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,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변경사유 : 건축심의('20.06.02) 결과 반영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일부 누락된 공동이용시설 반영을 위한 변경

마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(변경)

1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(변경없음)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 치	정비 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기정	노량진7 재정비 촉진구역	33,154 .5	7-1	22,478.0	동작구 대방동 13-31번지일대	112	-	-	112	-	-

2) 건축시설계획(변경)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층수		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평균	최고	
기정	노량진7 재정비 촉진구역	33,154 .5	7-1	22,478.0	동작구 대방동 13-31번지일대	공동 주택	23.67	237.44	90이하	18층 이하	27층 이하	
변경							24.33	237.44	90이하	18층 이하	27층 이하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구분		계	임대(㎡)				분양(㎡)			
					소계	40이하	40~50	50~60	소계	60이하	60~85	85초과
		기정	주택 (호)	576	100	46	43	11	476	172	301	3
			비율 (%)	100.0	17.4	8.0	7.5	1.9	82.6	29.8	52.3	0.5
		변경	주택 (호)	576	98	40	40	18	478	174	301	3
			비율 (%)	100.0	17.01	6.94	6.94	3.13	82.99	30.21	52.26	0.52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●장승배기길 변 : 건축한계선 7.5m ●15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3m, 6m ●기타 건축선 등에 대한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										

※ 변경사유 : 건축심의('20.06.02) 결과 반영에 따른 건폐율 변경 및 임대주택의 소셜믹스(Social Mix)를 위한 건립세대 수 변경

3) 용적률 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산 정 내 용				
토지이용계획	계 (구역면적)	택지(B) (공동주택)	신설 정비기반시설	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	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
	33,154.5㎡	22,478.0㎡	10,676.5㎡	5,442.5㎡	1,061.0㎡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• 순부담면적(C) =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-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-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 시설 국·공유지 = 10,676.5㎡ - 5,442.5㎡ - 1,061.0㎡ = 4,173.0㎡				
기준용적률	• 기준용적률 = 190% • 역세권입지에 따른 완화 기준용적률(A) = 195% -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역세권 반경 500m에 해당하는 면적에 비례하여 10%범위 내 용적 률 완화 적용				
상한용적률	• 상한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[(1.3 × (순부담면적 × 기준용적률) / 기반시설 제공 후 면적) = 기준용적률 + [(1.3 × (C × A) / B) = 195 + [1.3 × (4,173.0 × 195) / 22,478.0] = 242.06% ≥ 건축계획(안) 237.44%				

※ 사업시행인가시 확정

바.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(변경)

계획기준		●임대주택건설 :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% 이상 ●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% 이상 : 40㎡ 이하 ※ 40㎡이하 : 40~50㎡이하 : 50~60㎡이하 = 40~50% : 40~50% : 10~20%		
산출 근거		●전체세대수 : 576세대(변경없음) ●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: (기정) 100세대 → (변경) 98세대 (감 : 2세대) : 576세대 × 17% = 97.92세대 ∴ 98세대 > 97.92세대		
건립규모		세대수	전체 비율	임대주택 비율
기정	합 계	100	17.4	100.00
	40㎡이하	46	8.0	46.00
	40~50㎡이하	43	7.5	43.00
	50~60㎡이하	11	1.9	11.00
변경	합 계	98	17.01	100.00
	40㎡이하	40	6.94	40.82
	40~50㎡이하	40	6.94	40.82
	50~60㎡이하	18	3.13	18.36

※ 변경사유 : 임대주택의 소셜믹스(Social Mix)를 위한 건립세대수 변경

사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아. 정비사업 시행계획(변경없음)

자. 생태면적률 : 30%이상 확보(변경없음)

차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카. 건축계획(변경)

구 분		계 획 내 용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구역면적(㎡)		33,154.5	—	33,154.5	—
대지면적(㎡)		22,478.0	—	22,478.0	—
용적률 산정용 연면적(㎡)		53,370.97	증) 1.81	53,372.78	—
건축면적(㎡)		4,917.00	증) 550.78	5,467.78	—
용적률(%)		237.44	—	237.44	—
건폐율(%)		23.67	증) 0.66	24.33	—
세대수(세대)		576	—	576	—
높이(층)		27	—	27	—
주차대수	법정(대)	532	감) 2.1	529.9	—
	계획(대)	691	증) 59	750	—

※ 변경사유 : 임대주택의 소셜믹스(Social Mix)를 위한 건립세대수 변경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 변경 등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

4.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서

구분	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기정	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대방동 13-31번지 일대	33,154.5	-	33,154.5	-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1) 용도지역 결정 조서

구 분	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합 계			33,154.5	－	33,154.5	100.0
주거 지역	일반 주거 지역	소 계	33,154.5	－	33,154.5	100.0
		제1종일반주거지역	7,778.0	－	7,778.0	23.4
	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2,075.9	－	2,075.9	6.3
		제2종일반주거지역	23,300.6	－	23,300.6	70.3
		제3종일반주거지역	－	－	－	－
	준주거지역		－	－	－	－
일반상업지역			－	－	－	－

다. 기반시설 결정 조서(변경)

1)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위치		사용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기점	종점			
기정	중로	2류	9	15	특수 도로	640 (115)	상도동453	대방동45-3 8	보행자 우선도로	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.12.10	-
기정	중로	2류	25	15~2 0	집산 도로	1,325 (292)	대방동49-6	상도동366- 5	일반도로	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.12.26	등용길
기정	소로	3류	10	5~6	특수 도로	32	대방동11-2 5	대방동68-2 3	보행자 전용도로	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.06.03	-

※ ()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

2) 공원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기정	①	노량진근린공원 (대방공원)	근린공원	대방동 226-7번지 일대	6,881.6	-	6,881.6	-	-
변경	④	노량진근린공원 (생태공원)	근린공원	노량진동 252-3번지 일대	15,746.4 (896.4)	감10,195 (-)	5,551.4 (896.4)	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03호 2009.12.10	-

※ ()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

※ 정정사유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16호('20.05.28.)상의 변경사항(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따른 생태공원 면적 축소) 반영을 위한 면적 정정

3) 학교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변경	①	영화초교, 영등포 중교교	학교	대방동 13-2번지 일대	47,346. 0 (365.0)	감 14 (-)	47,332. 0 (365.0)	서울특별시고시 제1978-178호 1978.04.26	-

※ ()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

※ 정정사유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3호('17.12.21)상의 학교 변경사항(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학교 면적 축소) 반영을 위한 면적 정정

라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

구 분	가 구	면 적(㎡)	비 고
획 지	7-1	22,478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2) 건축물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

□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

구 분	가 구	용 도	비 고
주용도	7-1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-

☐ 건폐율 계획

구 분	건 폐 율	비 고
7-1	• 60.0% 이하	24.33% 계획

☐ 용적률 계획

구 분	용 적 률				비 고
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		
			상한용적률	법적상한용적률	
7-1	195%	－	242.06%	240%이하	237.44% 계획

☐ 높이 계획

구 분	높 이 기 준	비 고
7-1	•최고 30층 이하 / 최고높이 90m 이하	최고 27층 계획

☐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

구 분	적용위치	계 획 내 용
건축한계선	장승배기길 변	•대지 경계선으로부터 7.5m
	15m 도로 변	•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, 6m

마.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)

1)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

건립규모	전체세대수	전체비율 (%)	공공임대주택 세대수			공공임대주택 비율(%)		
			계	임대주택	소형주택	전체세대수 대비	전체비율	공공임대중 소형주택
합 계	576	100.0	98	98	—	17.01	100.00	—
40㎡이하	55	9.5	40	40	—	6.94	40.82	—
40~50㎡이하	45	7.8	40	40	—	6.94	40.82	—
50~60㎡이하	172	29.9	18	18	—	3.13	18.36	—
60~85㎡이하	301	52.3	—	—	—	—	—	—
85㎡초과	3	0.5	—	—	—	—	—	—

5.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붙임(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총괄) 고시) 및 「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도서」에 명시: 결정(변경)도서 게재 생략
6.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
※ 첨부된 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7.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(☎02-2133-7224)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(☎02-820-9813)에 관련 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

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
재정비촉진구역의 결정도(변경없음)

452 도로

362-46 5
453 공
455 대
451 도
360-56

13-12713
13-1003
13-423
13-563
13-5813
13-1013
13-1183
13-433
5-23도
5-243
5-102
3-6도
4-1도
5-1대
1-11대
3-4도
4-1도
1-11대

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
(면적 : 33,384.5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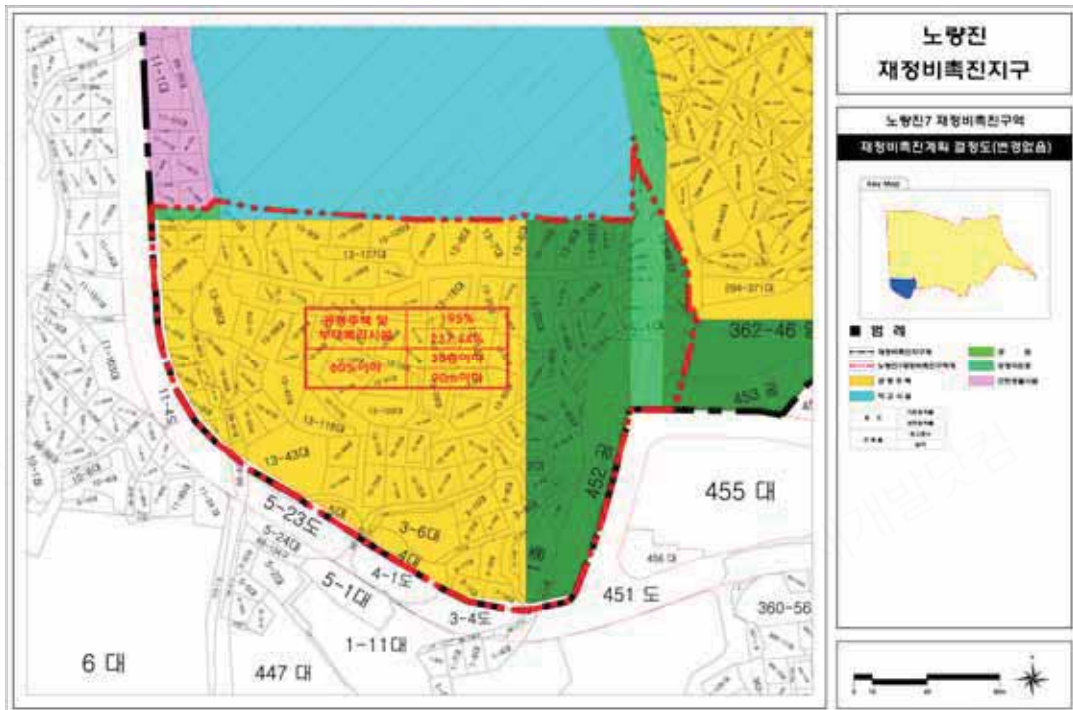
6 대
447 대

■ 범 례
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
재정비촉진구역
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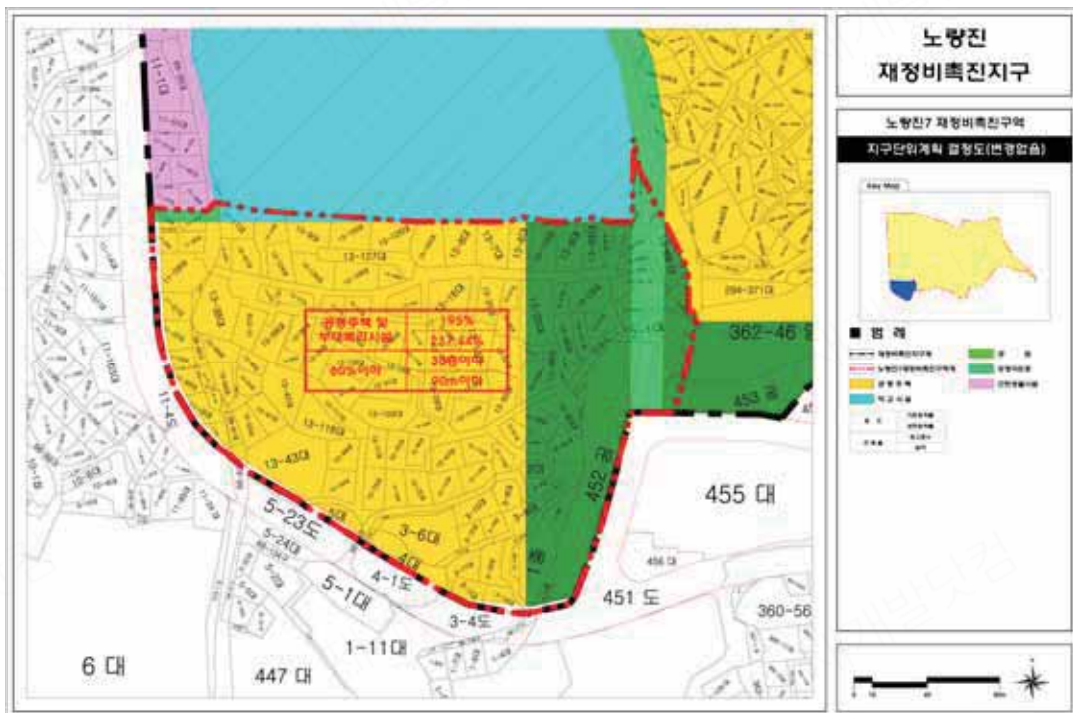
0 50 100

[illegible]

■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변경없음)



:

()

1.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· 유형 · 위치 ·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
가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나. 인구 · 주택 수용계획(변경)

구 분		계획세대(세대)		인구수(인)		비 고
	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	
합 계		11,076	11,076	29,729	29,729	—
기 시행구역		511	511	1,379	1,379	—
존치구역		1,471	1,471	3,796	3,796	—
재정비 촉진구역	소 계	9,094	9,094	24,554	24,554	—
	40㎡이하	1,048	1,057	2,830	2,854	—
	40~60㎡	3,704	3,695	10,001	9,977	—
	60~85㎡	3,906	3,906	10,546	10,546	—
	85㎡초과	436	436	1,177	1,177	—

※ 변경사유 : 노량진7구역 임대주택의 소셜믹스(Social Mix)를 위한 건립세대수 변경

- 다.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- 라. 공원 ·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(변경없음)
- 마. 교통계획(변경없음)
- 바. 경관계획(변경없음)
- 사. 도시 ·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없음)
- 아.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자.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(변경없음)
- 차. 용도지구 변경계획(변경없음)

카.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(변경)

구역명		구역면적 (㎡)	건폐율(%)		용적률(%)			평균층수/ 최고(높이)층수	비 고
			기준	계획	상한	완화	계획		
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		132,132.0	50이하	26.78	300이하	269.14	264.43	- / 33층(110m)이하	기준용적률 20%완화
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		16,208.0	50이하	43.59	414이하	414.00	397.94	- / 29층(107m)이하	역세권밀도계획적용
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		73,068.0	50이하	22.20	250이하	243.66	241.26	- / 30층(110m)이하	-
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		40,512.5	60이하	23.55	260이하	260.17	252.66	20층 / 30층(90m)이하	기준용적률 20%완화
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		38,017.0	50이하	18.57	300이하	272.82	270.63	- / 30층(90m)이하	기준용적률 20%완화
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		72,822.0	50이하	18.21	300이하	272.33	267.94	- / 28층(90m)이하	기준용적률 20%완화
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	기정	33,154.5	60이하	23.67	240이하	242.06	237.44	18층 / 30층(90m)이하	기준용적률 5%완화
	변경	33,154.5	60이하	24.33	240이하	242.06	237.44	18층 / 30층(90m)이하	기준용적률 5%완화
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		55,742.9	60이하	26.06	300이하	242.77	229.70	22층 / 30층(90m)이하	기준용적률 20%완화

※ 변경사유 : 노량진7구역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건폐율 변경

다.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(변경없음)

라.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(변경)

구분		합계	분양(부분임대)				임대					부분 임대
			소계	60㎡ 이하	60~85㎡ 이하	85㎡ 초과	소계	40㎡ 이하	40~50㎡	50~60㎡	60~85㎡	
총계	기정	9,094 (113)	7,456 (113)	3,135	3,885	436 (113)	1,638 [46]	649 [23]	639 [23]	329	21	113
	변경	9,094 (113)	7,458 (113)	3,137	3,885	436 (113)	1,636 [46]	643 [23]	636 [23]	336	21	113
노량진1촉진구역		2,992 (64)	2,445 (64)	1,280	1,067	98 (64)	547 [46]	223 [23]	224 [23]	100	—	64
노량진2촉진구역		421	315	99	216	—	106	—	—	85	21	
노량진3촉진구역		1,012	838	198	443	197	174	80	74	20	—	
노량진4촉진구역		860	713	352	361	—	147	60	64	23	—	
노량진5촉진구역		727 (26)	597 (26)	253	304	40 (26)	130	54	58	18	—	26
노량진6촉진구역		1,499 (23)	1,237 (23)	456	733	48 (23)	262	106	106	50	—	23
노량진7촉 진구역	기정	576	476	172	301	3	100	46	43	11	—	
	변경	576	478	174	301	3	98	40	40	18	—	
노량진8촉진구역		1,007	835	325	460	50	172	80	70	22	—	

※ ()는 부분임대 세대수, []는 기부채납 임대주택수임

※ 변경사유 : 노량진7구역 임대주택의 소셜믹스(Social Mix)를 위한 건립세대수 변경

- 하.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 거. 광고물 관리계획(변경없음)
 너. 폐기물 관리계획(변경없음)
 더. 방재계획(변경없음)
 러. 정보화계획(변경없음)
 머. 에너지순환계획(변경없음)
 버. 특성화계획(변경없음)
 서. 기타계획(변경없음)
 어.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(변경)
 1) 노량진1구역(주택재개발사업) : 변경없음
 2) 노량진2구역(주택재개발사업) : 변경없음
 3) 노량진3구역(주택재개발사업) : 변경없음
 4) 노량진4구역(주택재개발사업) : 변경없음
 5) 노량진5구역(주택재개발사업) : 변경없음
 6) 노량진6구역(주택재개발사업) : 변경없음
 7) 노량진7구역(주택재개발사업) :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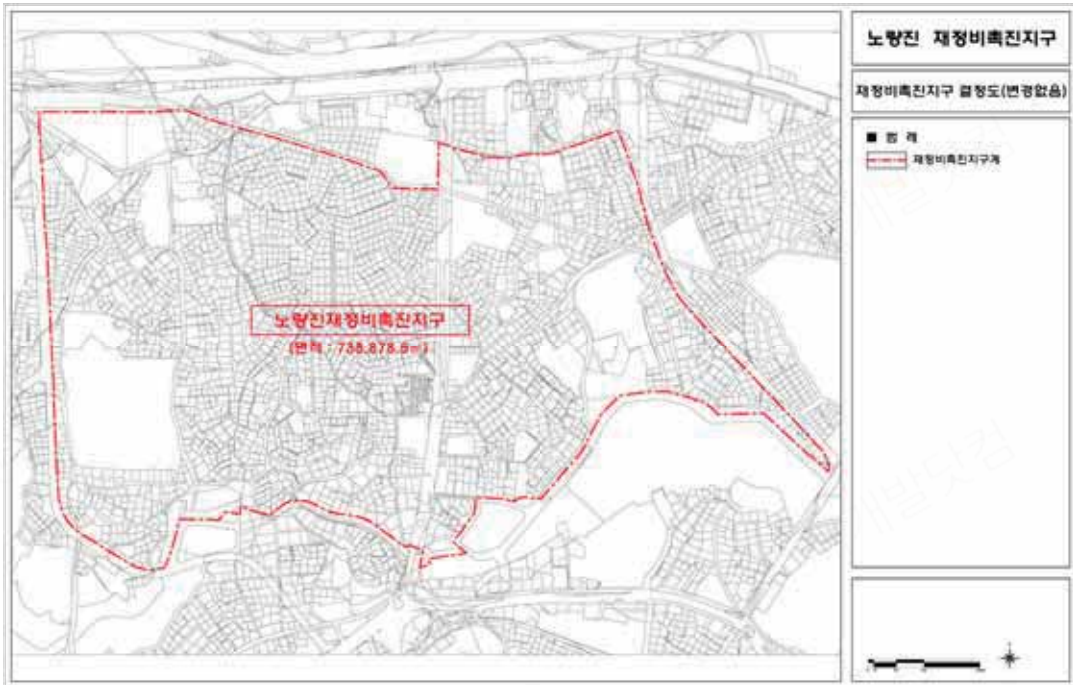
구역명		구역면적 (㎡)	건폐율(%)		용적률(%)			평균층수/ 최고(높이)층수	비 고
			기준	계획	상한	완화	계획		
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	기정	33,154.5	60이하	23.67	240이하	242.06	237.44	18층 / 30층(90m)이하	기준용적률 5%완화
	변경	33,154.5	60이하	24.33	240이하	242.06	237.44	18층 / 30층(90m)이하	기준용적률 5%완화

※ 변경사유 :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건폐율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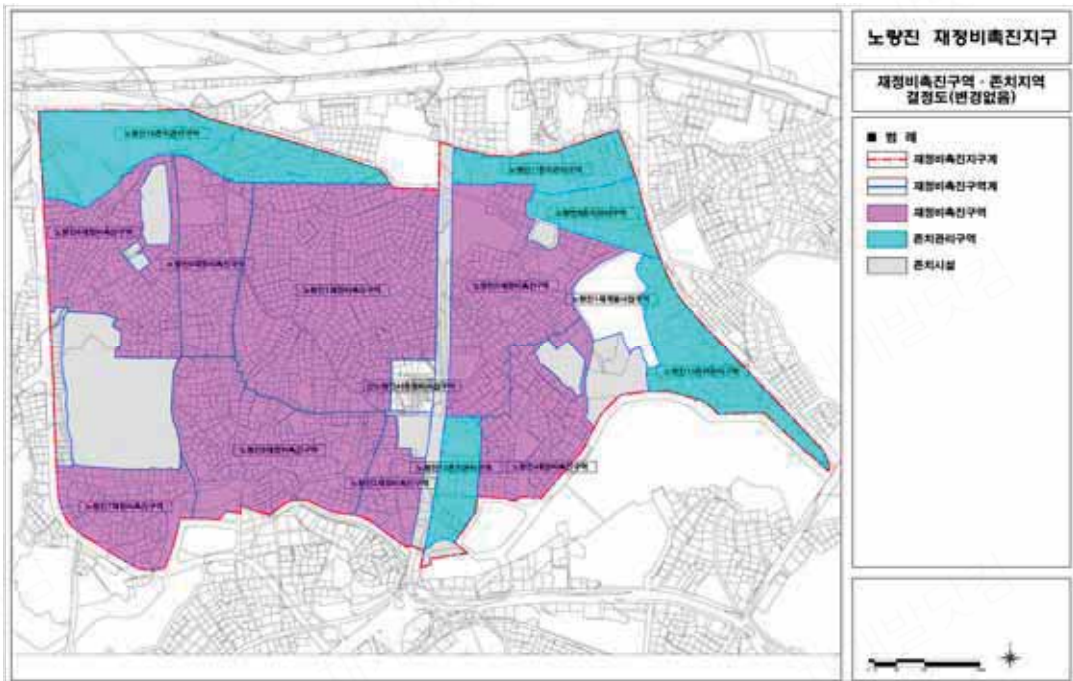
- 8) 노량진8구역(주택재개발사업) : 변경없음

저.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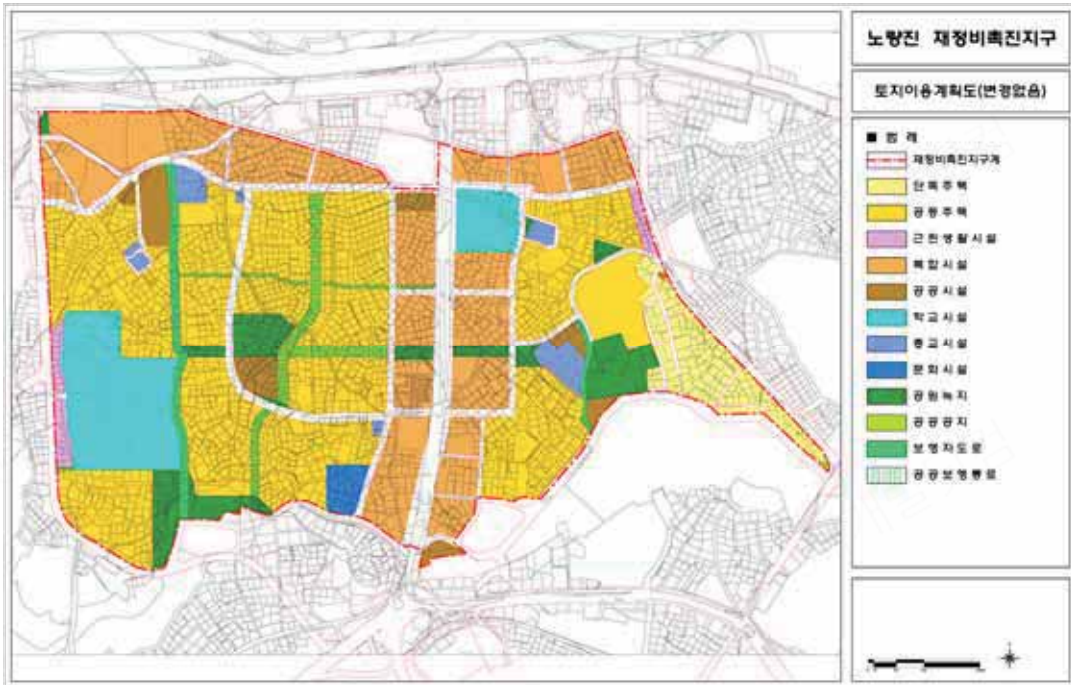
■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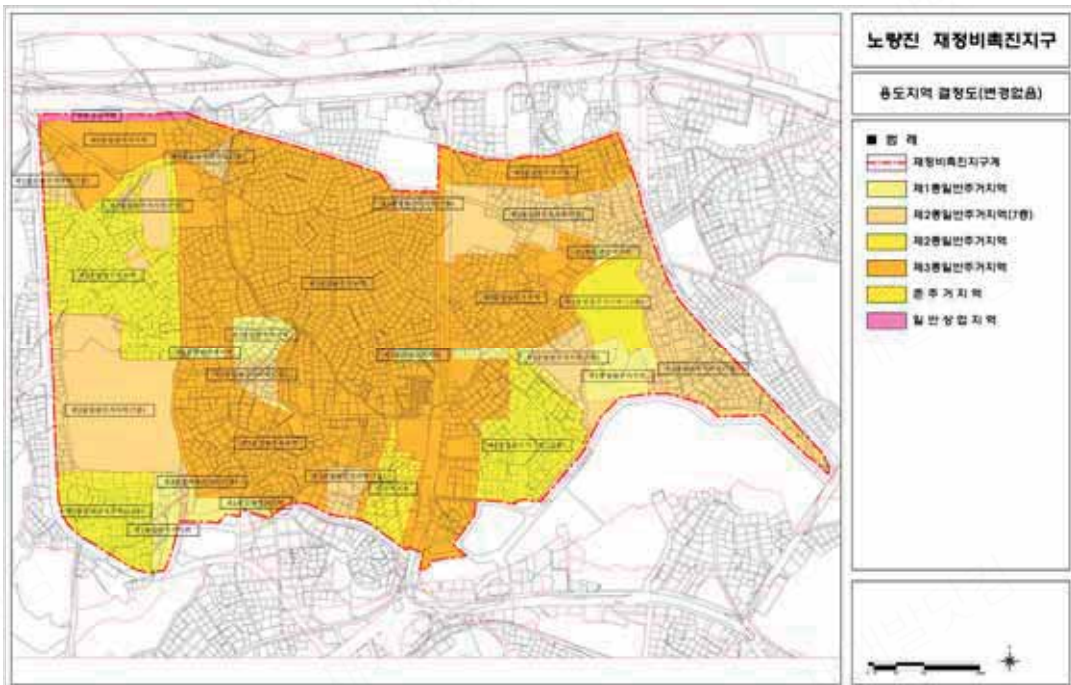
■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없음)

